#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6

발의연월일: 2020. 7. 15.

발 의 자:전재수·최인호·박재호

이병훈ㆍ허 영ㆍ김정호

고영인 · 이장섭 · 송옥주

김철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정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 법률 제 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벌칙) <u>&lt;신 설&gt;</u>	제27조(벌칙) ① 제3조제2항을 위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
	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①</u> · <u>②</u> (생 략)	$2 \cdot 3$ (현행 제 $1$ 항 및 제 $2$ 항
	과 같음)